

공 고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성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- 다 음 -

1. 결산검사위원

- 대표검사위원 : 김 기 창 (고령군의회 의원)
- 검 사 위 원 : 임 기 홍 (전직 공무원)
- 검 사 위 원 : 정 주 형 (세영회계법인)

2. 결산검사의견서

2024년 6월 3일

고령군의회의회장 김 명

